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75 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이재강・김문수・김우영

송재봉 · 정동영 · 윤종군

양문석 • 서미화 • 김준형

이언주 · 이기헌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.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.

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·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건설기계, 중장비,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, 어린이 통학로에 인접한 차선의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등).

법률 제 호

##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있다"를 "있으며, 등·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건설기계, 중장비,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어린이 통학로에 인접한 차선의 일부에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등·하교 시간대의 기준, 통행의 금지 등에 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·해제 및 관리) ① -----·해제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 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 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, 등・하교 시간대에 한 있다. 하여 건설기계, 중장비,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어린이 통학로에 인접한 차선 의 일부에 자동차등과 노면전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의 등 · 하교 시간대의 기준, 통 행의 금지 등에 대한 기준은

# 조례로 정한다.